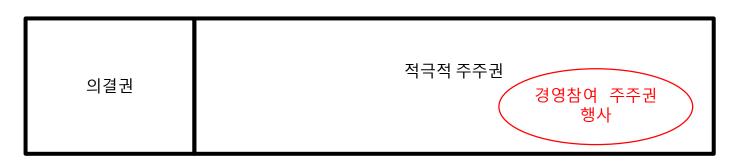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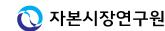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와 지배구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창균

Motivation

- ○2018.7.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 도입
 - > 의결권 행사를 넘어서는 주주로서의 권한 행사: 공개/비공개 대화, 공개서한, 주주제안 등
-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에 대한 논란
 - › 지배구조 투명화 통한 주주가치 제고 vs. 기업경영에 대한 과도한 간섭
 - > 반대론: 무용론(실효성), Pension Fund Socialism, weak governance structure
- ○주주권 행사관련 지배구조 점검과 개선의 필요성
 - > "A whale in a small pond"의 문제
 - > "Agency theory"의 관점에서 평가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투자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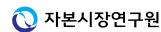
국민연금기금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운영현황

(단위: 십억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복지부문	126	136	140	143	145
	(0.03)	(0.03)	(0.02)	(0.02)	(0.02)
금융부문	469,253	511,698	557,682	621,018	638,217
	(99.88)	(99.88)	(99.89)	(99.90)	(99.91)
국내주식	83,930	94,896	102,359	131,520	108,914
	(17.86)	(18.52)	(18.33)	(21.16)	(17.05)
해외주식	56,611	69,936	85,658	108,279	112,961
	(12.05)	(13.65)	(15.34)	(17.42)	(17.68)
국내채권	258,072	268,637	279,344	289,401	310,993
	(54.93)	(52.43)	(50.03)	(46.55)	(48.69)
해외채권	20,587	21,593	23,215	23,274	26,587
	(4.38)	(4.21)	(4.16)	(3.74)	(4.16)
대체투자	46,655	54,659	63,667	66,817	76,620
	(9.93)	(10.67)	(11.40)	(10.75)	(11.99)
단기자금	3,399	1,978	3,438	1,727	2,143
	(0.72)	(0.39)	(0.62)	(0.28)	(0.34)
기타부문	443	490	478	481	420
	(0.09)	(0.10)	(0.09)	(0.08)	(0.07)
포트폴리오 총액	469,823	512,324	558,299	621,642	638,781

주: 1) 시장가 기준

2) 괄호 안은 포트폴리오 비중 자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투자 - 2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시장 점유율 추이

연도	국민연금	시가총액	비중
2012	68.1	1,263	5.39
2013	83.9	1,305	6.43
2014	83.9	1,335	6.28
2015	94.9	1,445	6.57
2016	102.4	1,510	6.78
2017	131.5	1,889	6.96
2018	108.9	1,562	6.97

주: 시가총액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각 연도 말 기준 시가총액 합자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한국거래소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시장 점유율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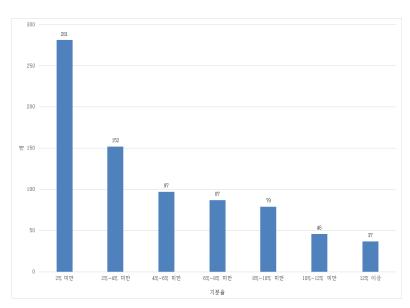


자료: 시장경제연구원(2012)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투자 - 3

- ○국민연금기금은 779개사 주식 보유 (2018년 말)
 - >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 2,101개 회사 중 37%
 - > 평균 지분율: 4.34%
 - > 지분율 5(10)% 이상 285(83)개 기업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지분율 분포: 2018년 말



자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지분율 상위사: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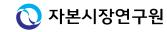
말				
회사명	금액	지분률		
풍산	1,038	13.6		
한솔케미칼	1,183	13.5		
한라홀딩스	638	13.5		
신세계	3,400	13.5		
동아쏘시오홀딩스	903	13.5		
만도	1,833	13.5		
SKC	1,812	13.5		
SBS	491	13.5		
지투알	167	13.4		
대림산업	4,714	13.2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 - 1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 성향 _(단위: %)				
 연도	찬성	반대	기타	
2006	95.8	3.7	0.6	
2007	95.0	5.0	0.0	
2008	94.5	5.4	0.1	
2009	93.1	6.6	0.3	
2010	91.9	8.1	0.0	
2011	93.0	7.0	0.0	
2012	82.8	17.0	0.2	
2013	89.2	10.8	0.0	
2014	90.8	9.0	0.2	
2015	89.5	10.2	0.3	
2016	89.8	10.0	0.2	
2017	86.7	12.8	0.3	
2018	80.7	18.0	1.3	
2019	81.7	17.5	0.8	

주: 1) 주주총회에 제안된 안건 수를 기준으로 계산

자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자료를 대상으로 저자 계산



^{2) 2012}년 높은 반대 비율은 상법 개정에 따른 정관개정이 많았기 때문

³⁾ 기타는 기권이나 보고안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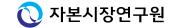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 - 2

국민연금기금의 안건별 의결권 행사 성향: 2019년

(단위: %)

안건 내용	찬성	반대	기타	반대 이유
정관 개정	77	23	0	
재무제표 승인	95	2	3	배당 불만족
이사 보수	64	36	0	성과대비과다
감사 보수	97	3	0	
사내이사 선임	85	15	0.2	과도한 겸임
사외이사 선임	81	19	0	독립성 취약, 장기 연임
감사/감사위원 선임	83	17	0	독립성 취약, 장기 연임
기타	73	11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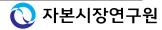
자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자료를 대상으로 저자 계산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 1

- ○2015.6.부터 적극적 주주권 행사
 - > 배당 관련 사안 한정
 - > 합리적 배당정책 부조/정책 무시 기업 대상
 - > 비공개 대화, 중점관리기업 선정 및 공개, 주주제안 참여
- ○매우(지나치게?) 조심스러운 출발
 - › 대상을 배당으로 한정하고 수단도 매우 mild
 - > 논의의 시작 자체가 정치적 영향력 배제 어려움 (2014.12. 시행령 개정)
 - > 법률 환경 감안: 배당에 한정하여 법정 기금의 대량보고의무 면제

	기업과의 대화	중점관리기업 지정	주주 제안 참여
대상	합리적 배당정책 부재 또는 배당정책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않은 기업, 배당 관련 반대 의결권 행사 기업, 저배당 성향 기업 우선 검토	일정기간 대화에도 불구 다음연도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개선이 없는 기업	대화를 거부하는 등 개선여지가 없는 기업 또는 명단을 공개한 중점관리기업 중 다른 주주가 주주제안에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방법	기업과 우호적 대화채널 구축하여, 주주가치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 배당정책의 자발적 수립 유도	중점관리기업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유도: 비공개 원칙,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결정으로 공개 가능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의결로 행사참여 혹은 직접 수행 여부 결정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 2

- ○2018. 7. SC 도입 계기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 본격화
 - 가 대상 확대: 배당관련 사항, 과도한 임원보수, 법령상의 위반우려로 인한 주주 권익 침해 가능성, 지속적인 반대 표결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사안, 예 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있는 사안 등
 - > 보다 다양한 방법: 비공개 대화, 중점관리기업의 선정과 공개, 공개서한, 주주 제안
- ○관련 제도 정비 후 본격적 활동 개시
 - >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자본시장법 상 5%, 10% rule
 - › "Guideline" 수립을 전제로 하되 필요 시 기금운용위 결정으로 활동 개시

참고: 5%를, 10%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7조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대량보유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 주식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전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 및 주식등의 총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한다. <개정 2008. 2. 29.>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ㆍ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전동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54조(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상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상법」 제363조의2ㆍ제366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를 제3자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2. 9.>

-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다만,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 10. 회사의 해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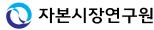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3조

제173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직원(직무상 제174조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서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요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권리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로서 매수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6.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 나. 다음 각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 2)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의 임면(任免)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반대론: 연금사회주의 - 1

- Pension fund socialism: Drucker(1976)
 - > 연금기금의 주식투자 확대에 그에 따른 지분율 증가
 - In terms of socialist theory, the employees of America are the only true 'owners' of the means of production. Through their pension funds they are the only true 'capitalists' around, owning, controlling, and directing the country's 'capital fund'. The 'means of production', that is, the American economy ... is being run for the benefit of the country's employees (Drucker (1976))
- ○국민연금기금 기업 지분 확대가 사회주의로 경제시스템 전환 초래할 것 이라는 주장
 - > 일부 기업/언론을 중심으로 한 주장

반대론: 연금사회주의 - 2

- 원 저자의 의도를 오해/곡해한 주장
 - > Drucker는 연금기금을 통하여 노동자가 기업을 소유함으로써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대체할 것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미국경제에서 사실상의 유일한 자본가의 지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
- ○국민연금기금의 politicization을 우려한 주장으로 넓게 해석 가능
 -)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경고를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좌우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경청할만한 가치가 있는 주장
 - > 투자 대상 자산의 위험-수익률 프로파일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산을 투입하여 기금의 가치 훼손 가능
 - 기국 ETI(economically targeted investment)의 예, 국민연금기금 초기 저리로 재정에 대여한 예 등
 - Social value 창출의 문제와 관련한 논쟁
- 외부의 압력에 취약한 "지배구조" 지적에 대응한 노력 필요

반대론: 실효성 문제

-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활동이 기업가치(주가)나 기업행태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증거 부재
 - > Denes, Karpoff, and Mcwilliams (2017): 73개 논문 대상 meta-analysis
- "CalPESRS effects" 에 근거한 반론
 - › Focus list의 효과에 대한 분석: English, Smythe, and McNeil (2004), Smith (1996) 등
- ○실효성을 근거로 한 반대를 serious하게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
 - > 국민연금기금이 일반적인 기관투자자보다 CalPERS와 같은 대규모 연금기금 과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
 - > Stigma effects를 무기로 하는 signaling 효과 가능

공적연금기금 지배구조 설계 원칙 - 1

○대리인 문제

- > 소유(ownership)와 통제(control)의 분리
- > 불확실성(uncertainty)의 존재: 정보비대칭
- > Monitoring 수단 부재/미흡
- >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에서 발생하는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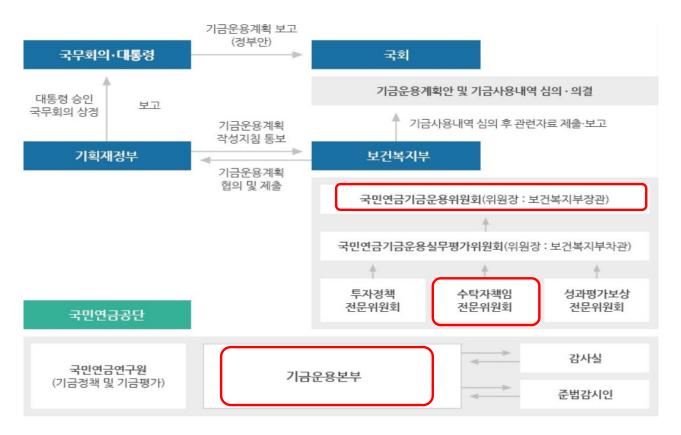
○대리인 문제에 대한 대응: control mechanism

- > 외부적 통제: 경영권 시장(market for corporate control), 상품시장(product market)의 경쟁, 주주의 경영자 활동 감시 등
- > 내부적 통제: 이사회(board of directors), 사외이사 등

공적연금기금 지배구조 설계 원칙 - 2

- ○공적연금기금의 경우 내부적 통제장치 강화가 선택 가능한 대안
 - > 외부적 통제장치 부재/free riding 문제 심각
 - > 이사회(기금운용위)가 핵심 기제
- 원칙은 "잔여 청구권자(residual claimants)"이 통제하는 이사회
 - > 국민연금기금의 진정한 잔여 청구권자는 future taxpayers
 - > 차선책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이사회에 참여하여 경제와 균형 도모
 - > 책무성(accountability)과 전문성(suitability)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주주권행사 관련 조직 현황



자료: http://fund.nps.or.kr/jsppage/fund/ifm/mpc_01_01.jsp

기금운용위

-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보건복지 부에 설치
 - > 주주권 행사와 관련하여 주주권 행사의 기본 원칙, 주주권 행사에 관한 지침 및 주주권 행사 주요 정책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
 - > 기금운용위는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을 포함하여 17인으로 구성
 - *ex-officio* member: 기재부를 포함한 4개 정부 부처 차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5인
 - 가입자 추천: 사용자 단체 추천 3인, 노동조합 추한 3인, 농어업인 단체 추천 2인, 자영업관련 단체 추천 2인, 소비자 및 시민단체가추천 2인
 - 전문가 2인 (정부 추천)

기금운용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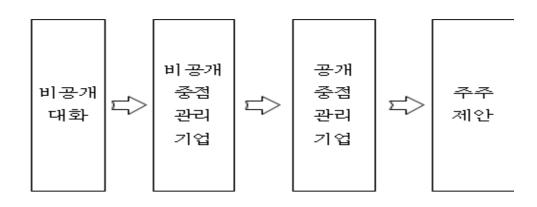
- ○의결권을 포함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국민연금공단에 속한 기금 운용본부
 - > 의결권 관련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를 판단하기 곤란하여 수책위에 결정을 요청한 사항, 수책위 주주권행사 분과 위원 3인 이상이 장기적 주주가 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수책위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책위의 결정에 따라 의결권 행사
 -)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및 비공개 대화 실시: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과 공개서한 결정은 수책위가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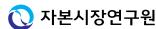
기금운용본부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대상과 절차

중점관리사안

- 배당
- 임원보수
- 법령상 위반 우려
- 지속적 반대 불구 개선 미흡

예상치 못한 사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

- 수책위는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 행사와 책임투자에 관한 각종 사항을 검토/결정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
 - > 주주권 행사의 일반 원칙 및 세부 기준 검토, 기금운용본부의 주주권 행사 내역 검토, 기금운용위 위원장 요청사항 검토 및 결정
 -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하여 수책위에 결정을 요청한 사안과 수책위 주주권행사 분과 위원 3인 이상이 장기적인 주주가 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수책위에 회부할 것을 요구한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
 - >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과 공개서한 결정
- ○기금운용위 위원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14인의 위 원으로 구성
 -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대표가 각각 3인 위원 추천하고 정부가 3인, 연구기관이 2인의 위원 추천

평가

- ○수책위의 구성에서 책무성과 전문성의 관점에서 취약성 지적 가능
 - 수책위가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서 핵심(또는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역할 수행
 - > 수책위의 의사결정이 정치적 영향력이나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여 책무성 확보에 애로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존재
 - > 수책위의 인적 구성에 국민연금기금의 잔여 청구권자인 납세자 대신 정부,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등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도록 허 용된 현재의 제도적 장치에 상당 부분 기인
 - >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측면에서도 현재의 수책위 운영 방식에는 미흡한 점이 다수 존재
 - 정기적인 회의 개최 없이 논의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 수시로 회의가 소집
 - 수책위 회의록 미공개
 - 기금운용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부분 의존
 - 수책위 위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이 매우 추상적으로 서술/위반 시 조치 부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2019.10.11.)

- ○기금운용위의 전문성 확보와 전문위 법제화가 핵심 내용
 - > 3인의 상근전문위원이 기금운용위 참여
 - 상근전문위원은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연금제도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민간인 중에서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가입자 단체가 각각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고 기금운용위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이 각 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인사 중 1인을 선정하여 임명
 - > 수책위 포함 3개 전문위를 법제화
- 법제화된 수책위는 새로 선임될 기금운용위 상근전문위원 3인과 외부전 문가 6인으로 구성
 - 외부전문가의 자격요건은 상근전문위원과 동일하고 기금운용위 위원장이 위촉

평가

- ○개선방안은 수책위에 법률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수책위가 수행하는 활 동과 결정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평가
 - > 수책위를 구성하는 상근전문위원과 외부전문가의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규정 함으로써 수책위의 전문성을 강화한 점도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조치
- ○지배구조 강화를 위하여 여전히 필요한 조치 다수 존재
 - > 수책위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방안 제시가 미흡
- ○추가로 필요한 고려 사항
 - > 외부전문가를 수책위 위원으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정부 개입을 배제하고 가입자 대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
 - 수책위가 지명한 민간전문가로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추천위원회가 시행령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만족시키는 20~30인 가량의 후보군을 확정하여 기금운용위 위원장에 추천하면 기금운용위 위원장이 사용자, 근로자, 지역 가입자를 대표하는 비상근 기금운용위 위원과 협의하여 후보군 중 9인의 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하는 방안을 고려

정책제언: 단기

- 외부전문가를 수책위 위원으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정부 개입을 배제하고 가입자 대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가 마 련될 필요
 - 수책위가 지명한 민간전문가로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추천위원회가 시행령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만족시키는 20~30인 가량의 후보군을 확정하여 기금운용위 위원장에 추천하면 기금운용위 위원장이 사용자, 근로자, 지역 가입자를 대표하는 비상근 기금운용위 위원과 협의하여 후보군 중 9인의 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하는 방안을 고려
 - > 수책위를 통한 논의의 정례화와 상시화
 - > 기금운용본부에 자료제출 또는 의견제시를 요구할 권한을 부여
 - 수책위 외부전문가 위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에 위반되는
 는 행위를 한 경우 기금운용위 위원장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 수책위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공개
 - > 외부전문가 위원에 대하여 공기업 사외이사에 준하는 수준의 보수 지급

정책제언: 장기

○기금운용위를 전문가 조직으로 개편

- > 가입자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로 국민연금 기금운용 감독위원회를 구성
 - 감독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 추천하고 감시
 - 대표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기금운용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 가독위원회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기금운용위원으로 추천하고 복지부 장관이 위원으로 선임
- > 기금운용위원이 전문위에 참여하여 소위원회 형태로 운영하는 체제 구축

